탄 원 서

김용군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단 유지 요청

사 건 번 호	2026노648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 고 인	김용군 (예비역 대령)
제 출 처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12-1부 귀중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들께.

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군 피고인에 관하여, 재판부께서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재판부의 어려운 책무를 잘 알기에 특정한 결론을 무조건 요구하기보다,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근거가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존중되고 검토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헌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중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 의혹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사실로 입증된 불법행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건이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모두에게 같은 인식과 의도, 같은 책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형사재판의 공정성은 바로 이 지점을 끝까지 구별하는 데서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1. 제1심 무죄 판단의 의미를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 제1심 재판부는 김용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개된 선고 내용에 따르면, 군사경찰 인력 추천 명단을 전달하고 관련 모임에 참석한 정황 등 의심을 낳을 만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계획에 실제로 공모하거나 실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정황을 가볍게 본 결정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사정과 범죄사실의 증명을 구별하여 평가한 판단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판기록 전체를 직접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된 제1심 판단의 핵심을 접하며, 항소심에서도 어떤 사실이 확인되었고 어떤 부분이 여전히 추론에 머무르는지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탄 원 취 지 (계속)

2. 피고인 개인의 인식과 실제 행위를 구분해 주십시오.

여러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모였다는 사실, 특정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 과거 군에서의 경험을 이유로 명단을 추천했다는 사실은 각각 그 의미와 경위를 살펴야 할 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화를 들었는지와 그 내용에 동의했는지, 실제 임무를 수락하고 수행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책임을 인정하려면 피고인 본인의 말과 행동, 당시의 인식, 구체적인 관여 정도가 개별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고 어느 지점에서 어긋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 또한 충분히 심리하되, 그 정황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추측이 빈자리를 메우지 않도록 살펴 주십시오. 누군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별도의 충분한 증명 없이 피고인에게 옮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3. 의심과 증명의 경계를 끝까지 지켜 주십시오.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지만, 형사재판에서 한 사람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느 한 사람에게 유리한 예외가 아니라,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켜야 할 기준일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와 논거가 제시된다면 당연히 면밀히 판단해 주시되, 제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정도로 그 내용이 충분한지도 엄격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론 보도와 사회적 논쟁이 많은 사건일수록 개인은 쉽게 하나의 집단으로 묶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판단받는 것은 여론 속의 이미지가 아니라, 특정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그에 대한 증명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회적 평가나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한 사람의 책임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해질 때,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더 커질 것입니다.

4. 재판부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의 탄원이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대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중대성을 외면하거나 다른 관계자의 책임을 가볍게 여겨 달라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중대한 사건이기에 더욱 정확하게 가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용군 피고인에 대해서는 제1심이 지적한 증명의 부족이 항소심에서 실제로 해소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 주시고, 그 부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제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십시오.

한 사람의 남은 삶에 오래도록 영향을 미칠 결정인 만큼, 어떤 선입견도 없이 개별 사정과 증거를 끝까지 살펴 주시기를 정중히 청합니다. 재판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피고인과의 관계: _____ 생년월일: _____